



2019년 1월부터

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

더 완화됩니다!

12월부터 신청하세요!



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
아래와 같이 추가 완화됩니다.
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!

부양의무자
가구에



1 기초연금
수급자*

또는



2 장애인연금
수급자

※ 단,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하며, 부양의무자가
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됨

+

수급(신청)자가



3 만 30세 미만
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

가
포함되어
있거나

부양의무자
기준을
적용하지
않습니다

인 경우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?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거주하는 지역의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

